

# 부산직할시 수도 급수조례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급수구역)

① 수도 급수구역은 부산시 일원으로 한다. 다만 공익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급수할 수 있다.

② 시외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써 정한다.

### 제 2 조 (급수종류)

① 급수종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.

#### 1. 전용급수

1호 또는 1개소 전용에 소요되는 것

#### 2. 공동급수

다수호의 공동 또는 특정용에 소요되는 것

#### 3. 소화급수

소방용에 소요되는 것

② 급수종류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.

### 제 3 조 (소화전의 관리)

소화용 급수는 소방용 연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이를 봉합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조 (급수의 청구)

①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급수청구가 있더라도 수도사정에 따라 급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수선 철거 또는 급수의 중지 폐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

④ 양수기에서 분기된 급수관의 위치변경, 개조 증설, 수선및 철거시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조 (급수용구의 정의)

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양수기까지의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.

### 제 6 조 (급수용구의 승계)

① 급수용구는 그 설비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의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도 적용한다.

### 제 7 조 (급수 사용자 및 종류 변경신고)

① 급수용구 관리자 및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급수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조 (관계공무원)

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 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에 관한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.

### 제 9 조 (급수제한)

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을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 제 10 조 (급수의 판매분여 금지)

급수는 공설공용 선박용 및 기타 시가 공설 또는 공인한 판매급수를 제외하고는 판매 또는 분여할 수 없다.

### 제 11 조 (급수용구 관리책임)

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가족, 고용인, 동거자, 기타 급수용구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조례에 규정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## 제 2 장 급수 공사

### 제 12 조 (급수공사의 정의)

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, 증설, 변경 또는 수선을 말한다.

### 제 13 조 (급수공사의 시행)

① 급수공사는 청구에 의하여 시가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하고 그 공사비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공사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. 다만,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를 납부한다.

③ 전 각항의 급수공사중 급수용구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관리의 책임은 관리인이 진다.

**제 14 조 (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)**

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시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.

② 대행업자의 선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

**제 15 조 (관말 전말의 특별장치)**

급수 관말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 16 조 (급수공사 수수료)**

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선공사의 관공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전항의 수수료는 공사완료후 청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. 다만, 1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 17 조 (급수공사 설계 및 재료검사)**

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관급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필요한 설계는 시에서 시행한다.

② 전항의 설계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전항의 수수료는 공사청구의 취소가 있을 때라도 환부하지 아니한다.

**제 18 조 (급수공사의 준공)**

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급수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제 15조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도 전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.

**제 19 조 (급수공사의 하자)**

시 또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급수공사가 준공후 1년 이내에 급수용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

**제 20 조 (급수공사로 인한 손해)**

① 시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급수용구의 파손, 누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
**제 21 조 (도로공사로 인한 급수공사)**

① 도로공사 기타의 사유로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또는 수선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의 청구가 없

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의 원인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 22 조 (급수용구의 개수명령)**

① 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급수용구의 파손,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급수용구를 조사케하여 개수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전 각항의 개수비용은 시비로 한다.

**제 22 조의 1 (시설부담금)**

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설 공공수도는 예외로 한다.

### 제 3 장 급 수

**제 23 조 (급수 계량)**

급수는 양수기로써 계량한다.

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

**제 24 조 (양수기 장치)**

① 양수기는 급수공사 시행과 동시에 장치하여야 한다.

② 양수기대금 및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. 급수 사용자의 형편으로 양수기 위치의 변경을 요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양수기의 수선은 시비로서 부담한다. 다만, 양수기를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양수기의 재장치비(양수기 대금 포함) 또는 수선비를 징수한다.

④ 기설 급수전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장치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전항 단서에 의한 양수기 대금 및 장치비는 일시에 전액을 불입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를 대여할 수 있다.

⑦ 전항에 의한 양수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⑧ 전 5항에 의한 양수기의 사용료 및 장치비가 완납되었을 때에는 시 소유로 한다. (기부 체납에 의한다)

**제 25 조 (양수기의 시험청구)**

- ① 양수기 사용자는 양수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시가 양수기의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.
- ③ 전 각항의 시험에 의하여 양수기의 회전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급수량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 1항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 26 조 (양수기 관리)**

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양수기의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재, 공작물의 설치 및 양수기 매물과 오물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양수기의 성능을 저해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 27 조 (급수표지)**

- ① 급수용구 관리자에게는 급수표지(급수장)을 교부한다.
- ② 전항의 급수전표지는 급수전 소재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.
- ③ 급수표지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.

**제 28 조 (급수의 중지 및 폐전)**

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.

- 1. 급수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
- 2.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급수정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고 3월 경과하고도 개전하지 아니한 때.
- 3. 제 32 조 제 3 항에 의한 정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정신청이 없을 때.
- 4.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5.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멸실되었을 때.

**제 29 조 (소화용 급수사용)**

- ① 시설 소화용급수를 소화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전항에 의한 사용기간은 1 전 1 회 10분을 초과할 수 있다.

**제 30 조 (시설변경 명령)**

- ① 급수공사후 수도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수도사용량 계량에 지장이 있을 때 또는 급수관의 구경이 분리할 때에는 시장은 적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동일한 지역내에 수도사용자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수도 사용량에 적합한 급수 시설 1 개로 통합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송배수관의 증설, 개량공사 및 급수계획상 시설 급수시설의 이설 및 개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및 전항의 공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.

**제 4 장 사용료 및 수수료**

**제 31 조 (사용료)**

-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.
- ② 급수용구 관리자 및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

**제 32 조 (요율)**

- ① 수도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② 전항의 요금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급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사한 급수의 요율을 준용한다.
- ③ 제 1항의 기본요금은 급수 사용자로부터 급수 사용 정지 신청이 없는 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에 따라 급수를 정지 혹은 단수 조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 33 조 (사용료 계산방법)**

- ①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양수기 2개 이상을 장치하였을 때에는 양수기 매개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.
- ② 1개의 양수기에 의하여 2호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설 공동급수의 사용량은 매호 균등히 사용한 것으로 한다.
- ③ 월 중도에 급수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료를 계산한다.
- ④ 1개의 양수기에 의하여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는 기본량은 업종별로 각각 계산 합계하고 초과량은 기본량 비율로 각각 계산하고 합계하되 월 사용량(조정량을 말함) 5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, 월 500톤 미만 사용하는 급수전이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에는 최고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양수기를 장치하여 따로 계산할 수 있다.
- ⑤ 한 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수전과 2개 이상의 업종이 있을때 수전별 사용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전수전에 최고율 업종을 적용한다. 다만, 월 조정량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.

⑥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신설, 폐전, 개전, 수전에는 일괄 계산한다.

**제34조 (양수기 점검)**

- ① 양수기의 점검은 매월 1회 이상하되 그 사용량은 매일 평균 사용한 것으로 한다.
- ② 가정용에 대해서는 2월 또는 3월마다 점검할 수 있다.
- ③ 양수기에 이상이 있는 기간의 사용량은 따로 인정 계량한다.

**제35조 (사용료 납기)**

- ① 수도사용료는 매 1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일시 사용급수 및 급수를 중지 또는 폐지할때의 사용료는 수시 이를 징수한다.
- ③ 수도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④ 납기 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- ⑤ 납기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3항, 제4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**제36조 (급수용수 손료)**

-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용구 손료를 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매월 징수한다. 다만,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전항의 급수용구 손료는 월별로 하되 별표3에 의한다.

**제37조 (선납료 선납)**

- ① 신규 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급수 개시전에 기본요금의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도 사용료로 선납하여야 한다.
- ② 제24조 제6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대여할 때에는 2월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선납금으로 급수를 폐지할 때에는 청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.

**제38조 (제수수료)**

- 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.
- 1. 제17조 제2항에 의한 설계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설계금액 50,000원까지 500원 다만, 50,000원을 초과할 때는 매 50,000원 마다 250원을 가산한다.

- 2. 재료검사 수수료는 수검류, 와사관류 또는 기타 부속품 1개에 대하여 각 5원.
- 3. 제18조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의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설계금액 50,000원 까지 200원 다만, 50,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매 50,000원마다 100원을 가산한다.
- 4. 제18조 제3항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200원.
- 5. 제41조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 해제 수수료는 1전 1회에 대하여 가정용은 650원, 기타는 1,200원

**제39조 (양수기 사용료)**

- ①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대여한 양수기에 대대하는 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.

**제40조 (급수공사비 및 사용료 감면)**
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 급수
  - 2. 공공의 필요를 위한 일시 급수
  - 3. 전.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.

**제 5 장 위반처분**

**제41조 (급수정지 및 취소처분)**

-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급수공사비 및 수도사용료 급수용구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체납한 자.
  - 2.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 분여한 자.
  - 3. 임의로 급수용구를 사설, 이전변경 개조, 증설수선 또는 훼손하거나 정수전을 개전한 자.
  - 4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의 특별 장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.
  - 5.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.
  - 6.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수속을 태만히 한 자.
  - 7.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.
  - 8. 급수용구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.
  - 9. 제18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를 사용하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연습용으로 사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한 자.
  - 10.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.

11. 제27조 제 2항의 급수표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.
12. 제13조 제 2항 제22조 제 2항 및 제30조에 따르지 아니한 자.
13. 제24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장치를 거부하는 자.
14. 양수기를 분실 또는 고의로 매몰한 자.
15. 허위 신고를 한 자.

② 전항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용구 및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.

**제41조의1 (부정수도 정보제공 자 보상지급)**

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제보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부정수도임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가명이나 허위주소 등으로 자료를제공한 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
2. 보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.
3.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산시 제안조례 및 부산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를 준용한다.

**제42조 (벌칙)**

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호에 따라 과태료와 추징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은 사용료 포탈이나 부정 급수에 대하여는 구경, 급수시간, 수압에 의한 급수량을 유량 계산하여 이를 사용량으로 한다.

**제43조 (채납처분)**

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 공사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

**제44조 (이의신청)**

- ① 사용료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

**제45조 (규칙)**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- ① 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조례) 조례 제 1호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이전에 시행한 제 1호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197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온천 급탕조례**

**제1조 ((급탕구역)**

온천급탕구역은 동래지구와 해운대 지구로 한다.

**제2조 (급탕종류)**

① 급탕종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.

1. 영업용급탕, 여인숙, 여관, 호텔, 요식업소 등에 대한 급탕.
2. 자가용급탕, 비영업용으로 일반 가정에 대한 급탕.
3. 욕탕 전용급탕, 공중공동욕탕에 대한 급탕.

② 급탕 종류는 시장의 허가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**제3조 (사용료)**

급탕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별표 급탕 요금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.

**제4조 (준용)**

온천급탕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.

1. (전용) 이 온천사업의 회계는 부산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에 의한다.

**제5조 (규칙)**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**부 칙**

- ① 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조례) 이 조례 제 1호 부산시 온천급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조례 제 1호 부산시 온천급탕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<별표> 급탕요금표

급탕종류	월 기본 초과요금			비고
	탕 수 량	요 금	(1m³당)	
영 업 용	300m²	18,000원	100원	
자 가 용	15 "	1,500 "	120 "	
급탕전용	1,000 "	33,500 "	50 "	